

의안번호	2202155
의 퇴 인	김소희의원
회 답 일	2024. 10. 28.
추계번호	24D228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원(연평균 4,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안 제5조)	-	-	-	200	-	200	40

주: 1. 안 부칙에서 안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최초 2028년에 수립한다고 규정
2.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금융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기본계획)	금융위원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6조(기후금융 촉진위원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후금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전담조직을 둠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9조(채권발행)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은 기후금융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이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0조(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녹색분류체계 적용 관련 특례를 부여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미첨부3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추계가 곤란
2	안 제5조(기본계획)	○	
3	안 제6조(기후금융 촉진위원회)	×	미첨부3호: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전담조직의 규모 또한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9조(채권발행)	×	미첨부3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관련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현 단계에서 채권발행 규모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가 곤란
5	안 제10조(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	×	정부의 중소기업 녹색전환 재정 지원 대상, 방법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가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본계획(안 제5조)

- 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유사사례인 환경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의 연 구용역 수행 예산 2억원(2022년 기준)을 준용하여 이와 동일하게 2028년 (안 부칙)부터 5년마다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표 2]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본계획	-	-	200	-	-	2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